

의안번호	2206141
의 퇴 인	김소희 의원
회 답 일	2024. 12. 19.
추계번호	24F5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에 대한 지출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에 대한 지출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24조의2 신설)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
 - － 1. 안전활동 교육훈련비, 2.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3.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 4. 종업원 건강증진비용, 5.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 6. 안전점검비용
 -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비용의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출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안전인증, 건강진단 실시 등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개정안에서는 안전활동 교육훈련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활동 교육훈련비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음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84조(안전인증), 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등
 - 또한,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등의 현황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기업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지출비용 규모와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고시하고 있으나¹⁾ 기업별 교육대상자의 규모 및 교육실시 계획, 안전인증·안전검사 소요 건수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²⁾에는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

1)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고, 이들을 선임해야하는 사업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자인 담당자의 규모는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어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표 1]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

(단위: 원)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관리 책임자	신규		44,000(1시간당 7,200)
	보수		44,000(1시간당 7,200)
안전관리자	신규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86,000(1시간당 5,400)
	보수	산업안전일반, 제조, 건설, 기타산업	141,000(1시간당 5,800)
보건관리자	신규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86,000(1시간당 5,400)
		산업의학	228,000(1시간당 6,600)
	보수	산업보건일반, 산업위생, 산업간호	141,000(1시간당 5,800)
		산업의학	171,000(1시간당 7,1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7,000(1시간당 5,800)
재해예방전문기관·석면조사 기관의 종사자	신규		186,000(1시간당 5,400)
	보수		141,000(1시간당 5,800)
안전검사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157,000(시간당 4,600)
	보수		107,000(시간당 4,400)
검사원 양성			160,000(시간당 5,700)

주: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표 2]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안전인증	가.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수수료: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출장비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3)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나.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품심사 비용+ 기본 수수료(480,000원)× 심사일수×심사원 수 + 출장비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 심사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서 발급	가.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나. 시험성적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10,000원
안전검사	가.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기관에서 책정한 수수료 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125,000원+ 출장비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